

충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373
----------	------

제출년월일 : 2012. 4. .
제출자 : 충주시장

1. 제안이유

- 호국·보훈의 달 저소득층 국가유공자에게 위문품을 지원하여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및 사기진작 도모.

2. 주요내용

가. 국가보훈대상자 중 저소득층에 위문품 등 지원(신설)
(안 제8조 제6항)

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등 정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국가보훈기본법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제1항~제4항
- 국가보훈기본법 제19조(예우 및 지원)
 - 제2항

나. 입법예고(2012. 3. 7 ~ 3. 27)결과 의견접수사항 없음

충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관하여”를 “국가보훈 대상자 예우와 지원에”로 한다.

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희생 · 공헌자”라 함은”을 ““희생 · 공헌자”란”으로, “법령이”를 “법령에서”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자유민주주의”를 “자유민주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국가보훈대상자”라 함은”을 ““국가보훈대상자”란”으로, “예우 및”을 “예우와”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국가보훈관계 법령”이란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와 지원에 관련된 법령을 말한다.

제2조제4호 중 ““보훈단체”라 함은 시”를 ““보훈단체”란 충주시(이하 “시”라 한다)”로 한다.

제3조의 제목 “(예우 및 지원대상)”을 “(예우와 지원대상)”으로 하고, 같은 조 중 “의한 예우 및”을 “따른 예우와”로 한다.

제4조 중 “존중하고 이를”을 “존중하고”로 한다.

제5조의 제목 “(예우 및 공훈 선양사업)”을 “(예우와 공훈 선양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장”을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예우 및”을 “예우와”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중 “순국선열 및”을 “순국선열과”로, “실시”를 “시행”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하여”를 “국가보훈대상자에게”로, “실시”를 “시행”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국가보훈대상자의 위로 · 격려 및 모범자의 포상과”를 “국가보훈대상자 위로 · 격려, 모범자의 포상,”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사적지·현충시설 건립과 정비사업 등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제6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참석보상금 : 2만원

제6조제2호 중 “입금한다.”를 “입금”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확인한다.”를 “확인”으로 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훈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훈단체의”로, “호의”를 “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회원 권익 신장과”를 “회원의 권리 증대와”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독립운동발상지 및”을 “독립운동발상지와”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공훈 및”을 “공훈과”로 한다.

제8조제1호 중 “매점 및”을 “가게와”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시세 감면과 각종 증명수수료 면제

제8조제5호 중 “점검 및”을 “점검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국가보훈대상자 중 저소득층에 위문품 등 지원

제9조 중 “선양 및”을 “선양과”로 한다.

제10조 중 “시행에 관하여”를 “시행에”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보훈 기본법」 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 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와 지원에 -----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
1. “희생·공헌자”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특별히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이 정하는 적용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희생·공헌자”란 ----- ----- ----- ----- ----- 법령에서 ----- ----- -----.
가. · 나. (생 략)	가. · 나. (현행과 같음)
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의 발전	다. ----- 자유민주주-----
라. (생 략)	라. (현행과 같음)
2. “국가보훈대상자”라 함은 희생·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 대상자가 되어 예	2. “국가보훈대상자”란 ----- ----- ----- -----

현 행	개 정 안
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 예우와 ----- -----.
3. “국가보훈관계 법령”이라 함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과 관련된 법령을 말한다.	3. “국가보훈관계 법령”이란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와 지원에 관련된 법령을 말한다.
4. “보훈단체”라 함은 시에 사무소를 두고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설립되었거나 국가보훈처장의 인가를 받은 단체를 말한다.	4. “보훈단체”란 충주시(이하 “시”라 한다)----- ----- ----- -----. -----.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제3조(예우 및 지원대상) 이 조례에 의한 예우 및 지원대상은 시에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와 보훈단체로 한다.	제3조(예우와 지원대상) ----- --- 따른 예우와 ----- ----- ----- ----.
제4조(시민의 책무) 모든 시민은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 사랑 정신을 존중하고 이를 선양하기 위한 국가와 시의 시책에 적극 협력한다.	제4조(시민의 책무) ----- ----- ----- 존 중하고 ----- ----- -----.
제5조(예우 및 공훈 선양사업) 시장은 국가보훈대상자의 명예심을 고취하고 나라 사랑 정신을	제5조(예우와 공훈 선양사업) 충 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현 행	개 정 안
선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공훈 선양사업 추진에 노력한다.	----- ----- ----- 예우와 ----- -----.
1. 시가 개최하는 중요행사 시 <u>순국선열 및 호국 영령 등에 대한 묵념을 포함한 국민의례 실시</u>	1. ----- ----- <u>순국선열과</u> ----- ----- ----- <u>시행</u>
2. 시가 개최하는 중요행사에 초청된 <u>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하여 의전상의 예우 실시</u>	2. ----- ----- <u>국가보훈</u> <u>대상자에게</u> ----- - <u>시행</u>
3. <u>국가보훈대상자의 위로·격려 및 모범자의 포상과 현충일 추념식 참석보상금 지급</u>	3. <u>국가보훈대상자 위로·격려,</u> <u>모범자의 포상,</u> ----- -----
4. <u>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주관의 사적지 및 현충시설 건립과 정비사업 등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u>	4. <u>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관</u> <u>하는 사적지·현충시설 건립</u> <u>과 정비사업 등의 행정적·재정적 지원</u>
5. · 6. (생 략)	5. · 6. (현행과 같음)
제6조(현충일 추념식 참석보상금)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2조 제5항에 해당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이 현충일 추념식 참석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현충일 추념식 참석보상금) ----- ----- ----- ----- -----

현 행	개 정 안
	-
1. 참석보상금은 2만원으로 한다.	1. 참석보상금 : 2만원
2. 현충일 추념식 후 14일 이내 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한다.	2. ----- ----- ----- 입금
3. 대상자의 적격 여부는 지방 보훈관서장에게 확인한다.	3. ----- ----- ----- 확인
제7조(현충일 보훈단체 지원) 시장은 보훈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 할 수 있다.	제7조(현충일 보훈단체 지원) ----- ----- 예산의 범위에서 보훈단체의 ----- 호 ----- ----- -----.
1. 회원 권리 신장과 단체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1. 회원의 권리 증대와 ----- ----- --
2. 호국·보훈 정신 함양을 위한 독립운동발상지 및 전적지 순례사업	2. ----- ----- 독립운동발상지와 -----
3. · 4. (생략)	3. · 4. (현행과 같음)
5. 공훈 및 나라 사랑 정신 선양을 위한 시설의 건립과 정비 사업	5. 공훈과 ----- ----- -----
6. (생략)	6. (현행과 같음)
제8조(복지지원 등) 시장은 국가	제8조(복지지원 등) -----

현 행	개 정 안
보훈대상자에게 관계 법령이나 각각의 해당 조례가 정한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복지지원을 할 수 있다.	----- ----- ----- ----- -----.
1. 시장이 설치·관리하는 공공 시설 내에 <u>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u>	1. ----- ----- <u>가게와</u> -----
2. · 3. (생 략)	2. · 3. (현행과 같음)
4. 시세 감면 및 제증명수수료 면제	4. 시세 감면과 각종 증명수수료 면제
5. 생존 애국지사 생활실태 점검 및 유족 위문	5. ----- --- <u>점검과</u> -----
<신 설>	6. 국가보훈대상자 중 저소득층에 위문품 등 지원
제9조(민간의 참여조성) 시장은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 사랑 정신의 <u>선양 및 보훈문화 창달</u> 과 관련하여 민간부문이 참여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노력한다.	제9조(민간의 참여조성) ----- ----- ----- <u>선양과</u> ----- ----- ----- -----.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u>시행에</u>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시행규칙) ----- ----- <u>시행에</u> -----.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비용수반 요인

개정안은 국가보훈대상자 중 저소득층에 위문품 등 지원
하도록 정하고 있다. (안 제8조)

2. 미첨부 근거규정

『충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 단서 중
제1호(연평균 1억원 미만의 비용이 해당될 때)에 해당된다.

3. 미첨부 사유

연평균 1억원 미만의 비용이 예상됨.
(소요액 : 12,000천원)

4. 작성자

- 문화복지국 주민지원과장 구 경 회

관계법령

▣ 국가보훈기본법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고,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에 따른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 또는 주민의 복지와 관련된 정책을 수립·시행하거나 법령 등을 제정 또는 개정할 때에는 국가보훈대상자를 우선하여 배려하는 등 적극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사업에 필요한 재원(財源)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9조(예우 및 지원)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대상자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 등 예우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